

#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설명 자료

2021. 11. 18

## □ 기본사항

- 법률안 명칭 :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(제정법률안)
- 대표발의 : 강은미 의원(정의당, 환경노동위원회)
- 의안번호 : 2113302
- 발의일자 : 2021. 11. 15

## □ 발의 배경

- 최근 발매되는 스마트기기의 경우 기초적인 자가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.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대표적이며, 노트북의 경우를 보면 제품을 조립하는데 쓰인 나사조차 특별한 규격을 가진 탓에 통상적인 드라이버로는 분해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
-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사의 서비스를 거치지 않는다면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계획된 탓인데 삼성, 애플, 구글 등 글로벌 IT제조업에 너나할 것 없이 해당
- 이렇게 수리를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판매된 제품의 전반적인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며, 또한 제조사는 자사에 종속된 독점적 수리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음. 결과적으로 제조사만 이득을 보는 형국이 되며 생산과정에서의 환경피해 증대도 불가피
-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조사의 횡포에 반발해, 소비자로 하여금 '수리할 권리(right to repair)'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. 제품을 소유한 자가 수리할 권리도 가진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, 이미 EU에서는 입법이 돼 시행 중이며 미국에서도 주의회의 입법은 상당수 진행됐고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도 추진 중임
- 수리할 권리 도입에 따른 공익적 효과 및 생태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내 입법 추진

## □ 입법을 통한 기대효과

- 소비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
  - 제품의 수명을 늘려 오래 쓸 수 있기에 비용 절약 가능
  - 각종 전자제품에 대해 표준화된 부품과 수리 설명서를 제공받을 수 있음
  - 자가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리를 위한 공작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됨
  - 필요시 수리전문기술이 있는 제3자를 통해 언제든지 수리 의뢰 가능

○ 사회적 차원의 이익

- 고가의 신규 디지털제품 구매력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줘 디지털격차 완화에 기여
- 부품 유통 및 영세수리업체에게 수리 관련 시장이 확대
- 사회 전반의 자원 소모와 환경피해를 경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 절감에도 기여

□ 법안의 주요 내용

○ 제조사 등 사업자의 의무

- 제품 설계 시 소비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수리 부품, 연결 부품, 수리 장비 등에 소비자의 쉬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해야 함
- 제품의 표면에 수리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표시해야 함
- 수리하는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해야 함
-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적정한 수량만큼 비축하고 공급해야 함

○ 소비자의 권리

- 수리권 대상 제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수리할 권리 보유
-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제조사로부터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

○ 수리권을 보장받는 품목의 선정 절차

- 전년도 판매 매출액 1000억 이상이고, 최종 가격이 30만원 이상이며 전기, 전자, 통신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 품목을 예비 품목으로 지정
- 예비품목은 관할 중앙부처가 1차 심사 ⇒ 총리실 산하 수리권정책위원회가 최종 심사

○ 설명서

- 권리에 대한 고지, 제품의 구조, 수리 방법, 부품 구입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명시

○ 수리 부품

-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며 쉽고 편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함
- 구입 당시 제품 수준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함

○ 수리 의뢰 및 수리 사업자

-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조사나 수리 사업자 등에 수리 의뢰를 할 수 있으며, 수리 의뢰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
- 중소 수리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지원함

○ 수리 비용 및 부품 비용에 상한제 도입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마련 : 바가지 요금 청구를 방지

○ 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: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등